

# 부 산 가 정 법 원

## 판 결

사 건 2014드단203010 이혼  
원 고 황AA (\*\*\*\*\*-1\*\*\*\*\*)  
주소 대전  
등록기준지 문경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 고 김BB (\*\*\*\*\*-2\*\*\*\*\*)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5.

##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7.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다가 1985. 10. 7.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안정된 직장을 바탕으로 평탄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다. 그러나 1997.경 IMF 사태로 원고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연속된 투자실패와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문제,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청주로 주거를 옮긴 후, 원고는 2007. 12. 1. 목사안수를 받은 다음 목회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와 뜻과 맞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청주에서의 생활을 접고,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피고가 전격적으로 2010. 7.경 부산으로 이주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때부터 별거하게 되었다.

바.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간헐적인 만남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목회활동 및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이견, 생활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인하였을 뿐이었다.

바.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2014.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계속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10. 7.경 이후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등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는 별거한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돌아보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인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고, 비난하는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철